

2000. 11. 24
제101회 임시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 장 재 영)

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 세입분야에서는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감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세출분야에서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등 실업대책비와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진료비, 그리고 추가로 발생한 필수경상비 및 당면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음.

Ⅱ.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

1. 광주광역시 서구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88,015,053	82,513,964	5,501,089	6.67
일반회계	79,643,870	74,812,781	4,831,189	6.46
특별회계	8,371,183	7,701,183	670,000	8.70

- 200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0년도 기정예산 대비 6.46%인 4,831,18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74,812,781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예산안규모는 2000년도 기정예산 대비 8.70%인 67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7,701,183천원임.
-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67%인 5,501,089천원이 증액편성되어 88,015,053천원임.

2. 위원회 소관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88,015,053	82,513,964	5,501,089	6.67
의회운영위원회	1,156,294	1,156,294	0	0
기획총무위원회	32,187,135	29,570,019	2,617,116	8.85
사회도시위원회	54,671,624	51,787,651	2,883,973	5.57

3.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세입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4,497,844	41,202,818	3,295,026	8.00
지 방 세 수 입	14,203,000	14,250,000	△47,000	△0.33
세 외 수 입	8,728,661	7,922,548	806,113	10.17
경상적 세외수입	4,677,858	3,916,607	761,251	19.44
임시적 세외수입	4,050,803	4,005,941	44,862	1.12
지 방 교 부 세	200,000	0	200,000	100.00
조 정 교 부 금	18,957,200	16,843,000	2,114,200	12.55
보 조 금	2,408,983	2,187,270	221,713	10.14
국고보조금등	864,509	865,129	△620	0.07
시·도비보조금	1,544,474	1,322,141	222,333	16.82

○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일반회계)은 기정예산액 대비 8.00% 증가한 44,497,844천원을 계상하였음.

-지방세수입 중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은 증액되었으나 종합토지세가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0.33% 감소한 14,203,000천원을 계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9.44% 증가한 4,677,85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사용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12% 증가한 4,050,803천원을 계상함.

-지방교부세 200,000천원을 계상함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증대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55% 증가한 18,957,200천원을 계상함.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14% 증가한 2,408,983천원을 계상함.

나. 부서별 세입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

소관부서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증(△)감율
합 계	44,497,844	41,202,818	3,295,026	8.00
기획감사실	22,445,027	20,439,027	2,006,000	9.81
정보통신실	15,000	15,000	0	0
총 무 과	39,357	14,957	24,400	163.13
주민자치과	479,327	435,165	44,162	10.15
사회진흥과	2,334,345	1,805,695	528,650	29.28
지 방 세 과	17,641,240	16,952,914	688,326	4.06
민원봉사과	348,345	353,073	△4,728	△1.34
보 건 소	1,195,203	1,186,987	8,216	0.69

(2) 세출예산안(일반회계)

가. 소관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

소관부서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증(△)감율
합 계	32,187,135	29,570,019	2,617,116	8.85
기획감사실	14,306,550	13,141,745	1,164,805	8.86
정보통신실	675,079	612,735	62,344	10.17
총 무 과	4,598,346	4,573,946	24,400	0.53
주민자치과	341,417	336,517	4,900	1.46
사회진흥과	4,513,968	3,178,496	1,335,472	42.02
지 방 세과	436,828	433,008	3,820	0.88
민원봉사과	254,731	244,572	10,159	4.15
동 예 산	4,454,750	4,454,750	0	0.00
보 건 소	2,605,466	2,594,250	11,216	0.43

나. 성질별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2,187,135	29,570,019	2,617,116	8.85
인 건 비	12,269,656	12,269,656	0	0.00
물 건 비	7,902,168	7,836,942	65,226	0.83
이전경비	5,061,537	5,058,496	3,041	0.06
자본지출	4,532,484	3,148,440	1,384,044	43.96
융자및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및기타	2,421,290	1,256,485	1,164,805	92.70

다. 투자부문(세세항)별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2,187,135	29,570,019	2,617,116	8.85
경상예산	23,537,730	23,505,570	32,160	0.14
인건비	12,269,656	12,269,656	0	0.00
경상적 경비	11,268,074	11,235,914	32,160	0.29
사업예산	5,659,415	4,239,264	1,420,151	33.50
보조사업	4,034,551	2,971,738	1,062,813	35.76
자체사업	1,624,864	1,267,526	357,338	28.19
채무상환				
지방채상환				
채무부담행위상환				
예비비등	2,989,990	1,825,185	1,164,805	63.82
예비비	2,196,965	1,032,160	1,164,805	112.85
기타	793,025	793,025	0	0.00

(3) 계속비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계속비연부액			사유
		1999년	2000년	2001년	
경 정	4,514,000	1,080,000	2,434,000	1,000,000	
기 정	4,514,000	1,080,000	1,598,528	1,835,472	
○ 국악박물관					
경 정	4,034,000	600,000	2,434,000	1,000,000	
기 정	4,034,000	600,000	1,598,528	1,835,472	

III. 검토의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감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등 실업대책비와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진료비 그리고 추가로 발생한 필수경상비 및 당면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000년도 기정에

산액 대비 8.00%, 32억 9,502만 6천원(본예산대비 25.08%, 8,921,910천원)이 증액된 444억 9,784만 4천원, 세출은 2000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8.85%, 26억 1,711만 6천원(본예산대비 20.71%, 5,521,249천원)이 증액된 321억 8,71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률
세 입	44,497,844	41,202,818	3,295,026	8.00
세 출	32,187,135	29,570,019	2,617,116	8.85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본예산액	본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세 입	44,497,844	35,575,934	8,921,910	25.08
세 출	32,187,135	26,665,886	5,521,249	20.71

자세한 것은 집행부 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편성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추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제 2 회 추경예산안	본예산액	본 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지 방 세 수 입	14,203,000	13,750,000	453,000	3.29
세 외 수 입	8,728,661	6,931,966	1,796,695	25.92
경상적 세외수입	4,677,858	3,631,437	1,046,421	28.82
임시적 세외수입	4,050,803	3,300,529	750,274	22.73

이번 추경안에서 지방세수입은 본 예산액 대비 3.29%가 증가한 14,203,000천원을, 세외수입은 본 예산액 대비 25.92%가 증가한 8,728,661천원을 추경편성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자체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며 추정치에 불과하여 정확한 예산액수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외수입에서 본 예산액과 비교 25.92%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예측은 세출예산의 재원을 추정하므로 세출예측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세입이 정확하게 예측될 수 없다면 세출은 세입에 근거하므로 예산편성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세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전망 등을 고려하고, 경기동향에 유의함과 동시에 세목별동향, 지역별 경기동향(특히 법인의 업종별 경기동향)을 충분히 감안하여 오차의 범위를 줄여나가는데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추경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내역
총무과	24,400	○시민의 날 기념「무등축전」 8,200(일반보상금, 특별교부금) ○시민의 날 기념「무등축전」 8,200(일반운영비, 시보조금) ○예비군중대본부 행정장비 지원 8,000(자산취득비, 시보조금)
주민자치과	2,400	○휴대폰 통화차단기 설치 2,400(시설비, 시보조금)
사회진흥과	300,000	○인공암벽 등반시설 279,881(시설비, 특별교부세·교부금) ○인공암벽 등반시설 8,032(감리비, 특별교부세·교부금) ○인공암벽 등반시설 2,087(시설부대비, 특별교부세·교부금) ○인공암벽 등반용품 10,000(자산및물품취득비, 특별교부세·교부금)
보건소	8,216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약품비 8,216(국시비보조금)

○ 이번 추경의 경우 예산의 성립전 사용액은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총 3억 3,501만 6천원으로써 소요재원 전액이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이들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재정의회주의의 원칙상 모든 예산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재량권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가 예산의 성립전 사용입니다(지방재정법 제36조). 다만 이 제도는 재정에 관한 대원칙인 재정의회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것으로서, 그 요건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하는 것은 성질상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하는 것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해복구비 등을 말하며, 이러한 경비는 국가가 전액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을 이처럼 엄격한 요건 하에 행하도록 하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성립전 사용이 재정의회주의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재정의회주의 원칙상 성립 전 예산사용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